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산업경제위원회**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정·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,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반영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상위령에 맞게 인용법령 등 변경(안 제2조, 제3조)
  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→ 「소상공인기본법」
-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규정을 신설(안 제5조)
-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(안 제9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(안 제10조~제15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가. 제출 배경

- 소상공인은 도내 경제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민의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정책 자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

- 2021년에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이 소상공인 영역에 특화된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,
- 법제처의 “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(심의위원회 등)은 명칭, 기능 등 지자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음”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

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**안 제2조 제1호**는 소상공인을 정의한 것으로 상위법 제·개정으로 인하여 인용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
- **안 제5조**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**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**으로 본 조항의 신설을 통해 1년 단위의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음
  - 또한, 시행계획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7조제3항의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, 현황 및 전망, 각종 보호 및 육성 시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필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
  - 이를 통해 **소상공인지원 사업 및 정책의 체계성, 일관성 및 지역적 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**
- **안 제8조 제2항**은 기존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외에 단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2년 충청북도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함께 소상공인의 권익신장 및 보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**안 제9조**는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,
  - 충청북도는 기존 위원회의 과잉 설치 방지와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(2000년)에 따른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해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근거로 소상공인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,

- 2010년 법제처는 “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(심의위원회 등)은 명칭, 기능 등 지자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다” 라는 유권해석으로 개정을 권고하였음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성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0조 ~ 제1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소상공업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까지 충청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가 증가해 왔으며, 충청도 사업체의 약 67.7%<sup>3)</sup>를 차지하는 등 도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는 영역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보임
-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으며, 소상공인은 극한의 어려움속에 내몰리게 되었고 충청도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였음
-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단독 자문기구의 부재는 도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수용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음
- 본 개정을 계기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효과 외에도 충북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대해 정책 및 사업의 일관성, 체계성, 적합성 및 전문성 확보로 도내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도 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-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개정 취지 및 내용, 형식의 적절성,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

3) 충북 전체 사업체 수 : 133,522개(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, 통계청)

충북 소상공업체 수 : 90,394개(19년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, 통계청), 전체 사업체 대비 : 67.7%